

##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(GRRC) 선정계획 공고(안)

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(GRRC)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월 00일

경기도지사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설치근거 :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설치목적 :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

#### 다. 센터기능

- 1)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
- 2)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
- 3)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
- 4)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
- 5)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
- 6)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 역할

## 2. 센터의 선정

### 가. 선정분야 : 자유공모

- 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 및 디지털혁신기술 등 도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우대

### 나. 선정규모 : 4개 센터

### 다. 선정방법

1) 심사절차 : (1차)서류심사 ⇒ (2차)발표평가 ⇒ (3차)현장점검 ⇒ (4차)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(최종 확정)

가) 1차 서류심사는 자격기준, 연구과제 분야 중복여부, 사업비 계상기준 적정여부 등 심사

나) 2차 발표평가는 1차 심사에서 통과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시행

다) 3차 현장점검을 통해 '주관기관 연구 환경·지원시설' 적정성 확인

라) 최종선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

-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점(최고·최저점 제외)이 60점 이상인 기관 중 가산점을 포함해 고득점 기관 순으로 심의

### 2) 평가내용

가) 센터 설립의 필요성

나) 사업목표의 구체성·명확성

다)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사업화

라) 센터 지원 및 운영체제의 적정성

마) 기타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

바) GRRC사업과 연계한 지역현안 해결 등 도정 연계성

### 3) 우대조건

가) 시비 의무부담 외 시비 추가 부담 우대(정량평가) (최대10점)

- 가산점 : 시비 의무부담률(20%)의 매 1% 이상 상향시 1점씩 가산 (30%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부여)

### 4) 참여제한 및 유의사항

가) 사업개시('23.8월)기준 중앙정부 등 정부사업(총사업비 10억원 이상)의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의 센터장으로 참여를 제한함

나) 사업개시('23.8월)기준 GRRC센터 운영 중인 주관기관은 신규센터 선정 참여를 제한 함

다) 정부 등 R&D과제 사업을 추진 중 사업비 횡령 등 부적정 운영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자

### 3. 지원내용

가. 지원기간 : 기본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 가능(총 6년)

나. 지원내용 : 센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

다. 지원규모 : 센터 당 연 5억 사업비 지원

※ 道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라. 지원조건 : 도비 지원액의 100%(현금 30%) 이상을 시와 민간(대학, 기업 등)에서 부담하여야 하며, 시비는 도비 지원액의 20% 이상, 주관기관은 도비 지원액의 10% 이상, 참여기업은 도비 지원액의 5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.

※ 민간부담금에서 시비 제외하고 시비를 의무부담비율로 조정

### 4. 센터의 요건

가. 주관기관

1) 경기도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(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분교 포함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소재지에 설립등기 하여야 함)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이어야 하며, 연구센터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(연구인력, 연구시설, 지원인력 등)이 있거나 확보 가능하여야 함

2)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명의의 독립된 사무실과 연구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센터시설의 전체 면적은 660 m<sup>2</sup>이상이어야 하며, 기존 연구소 또는 타 부설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독립된 센터로 불인정

3) 센터입구에는 「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실을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사무실 입구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

나. 참여기업 : 신청일 현재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신청 연구 분야와 연관된 기업을 원칙으로 함

## 다. 과제구성 : 연구개발과제(기초·응용)로 구분

### 1) 연구개발과제

가) 기초과제 :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 및 개발과제로 구성하며, 센터의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밀접히 관계되는 과제

※ 사업비 구성 : 경기도비 + 주관기관

나) 응용과제 : 산업화 및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 중심의 과제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개발과제

※ 사업비 구성 : 경기도비 + 시군비 + 참여기업 부담금

## 라. 연구원 구성

### 1) 센터장(총괄책임자)

가)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(부교수 이상) 또는 정규직 연구원(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참여한 자)으로 총괄과제 책임자이어야 하며, 센터사업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자

나) 징계,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, 총괄책임자가 교수인 경우 강의시간 축소(주당 수업시간 6시간 이내) 등을 통하여 GRRC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

2) 참여 연구원 :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교수, 박사, 석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과제 책임자 및 핵심연구원(교수)은 10명 내외로 구성

## 5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서류 및 서식 : 경기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g.go.kr>/고시·공고) 참조

나. 접수기간 : 2023. 4. 00. ~ 5. 00.(18:00까지)

다. 접수처 :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(031-8008-4489)

※ 방문접수에 한함

## 6. 주요일정(안)

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접수마감       | → | 발표평가                  | → | 현장점검                  | → | 선 정        | → | 협 약        |
| '23. 5.00. |   | '23. 6.00.<br>~ 6.00. |   | '23. 6.00.<br>~ 6.00. |   | '23. 6.00. |   | '23. 7. 0. |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별도 통지 예정

## 7. 기타사항

- 가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함
- 나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g.go.kr>/고시·공고) 및 (사)경기도GRRC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grrc.or.kr>)를 참고하시거나 경기도청 과학기술과(031-8008-44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